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시험대비」 형사소송법 모의고사 및 해설(2)

| 김상천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김상천 경찰 형사소송법

- ▶ 2차 대비 김상천 형소법
- 2021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특강
- 개강 : 2021/06/07
- 시간 : [월] 09:00~13:00

06.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해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에 있어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 ③ 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 할증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 ④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

06. 【정답】 ④ 【해설】 수사 ♠ 난이도 중

- ① (O) 제473조
- ② (O) 2008도11999
- ③ (O) 제75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제209조, 제219조
- ④ (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2007도11400).

07.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A가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A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를 긴급체포한 경우, A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 ②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라도 체포시부터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석방하여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는 있다.
-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흥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99도4341).

07. 【정답】 ② 【해설】 수사 ♠ 난이도 중

- ① (O)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만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2016도 5814).
- ② (X)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간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2011도12927).
- ③ (O)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2001도4291).
- ④ (O)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형법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항된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별규정에 따라 처벌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별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08.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형법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항된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별규정에 따라 처벌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별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 ② 해당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피고인 A(병원 경영자)가 법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B(병원 사무국장)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께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양별규정의 행위자인 B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 ④ 피고인 A(병원 경영자)가 법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B(병원 사무국장)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께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양별규정의 행위자인 B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하고 있는 이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양별규정의 행위자인 B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314조를 적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08. 【정답】 ④ 【해설】 증거 ♠ 난이도 상

- ① (O) 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② (O) 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③ (O) 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④ (X)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6도 9367 판결).

09. 구속 전 피의자심(영장실질심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09. 【정답】 ④ 【해설】 수사 ♠ 난이도 중

- ① (O) 제201조의2 제1항 · 제2항
- ② (O) 제201조의2 제2항
- ③ (O) 제201조의2 제7항
- ④ (X) 검사와 변호인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다.

10.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 ②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체포 또는 재구속할 수 있다.
- ④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10. 【정답】 ① 【해설】 수사 ♠ 난이도 하

- ① (X)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피의자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97도21).
- ② (O) 제214조의2 제1항
- ③ (O) 제214조의3 제1항
- ④ (O) 제214조의2 제1항

* 해당 강의는 박문각온라인(www.pm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